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산·소득 조회용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제55조에 따라 자료를 제공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미건설(주), 신동아 건설(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일정기간이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이하 같다.)의 청약 신청자(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분양계약 및 당첨자 명단 관리, 만족도 조사 및 분양 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표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분양주택 특별공급 자격 정보, 입주자저축 정보, 주택소유 정보, 과거 당첨사실에 관한 정보
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신고액(산재·고용보험 보수월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 내역,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 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 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산	☒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축물 자산가액(시가표준액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 기관, 「주택법」 제55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전산 관리지정기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조사자,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분양주택의 청약 신청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분양주택의 당첨자 계약 및 명단 관리, 거주무실태조사,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청약 신청자 당첨·계약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마.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 세대주(분양주택 입주 신청자)의 분양 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분양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5.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 관계	서명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